

2016.11.11

## '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' 안내

### 1. 개정 이유

관세청은 『FTA 관세특례법』 등의 개정에 따라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, 수출입기업 및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**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및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제출(원본 스캔)을 허용**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『**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**』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.

### 2. 입안 예고 주요내용

- 1) FTA 협정관세 **사후적용 신청 시 전자제출 허용**
  -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스캔한 전자이미지와 전자자료교환 시스템(EODES)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원본으로 인정
- 2)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**민원업무 전자신청 허용**
- 3)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**현지확인 대상 선정기준 완화**  
(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)

2016.11.11

## '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' 안내

### 2. 입안예고 주요내용

- 4) 사전심사 신청서 및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전자신고 허용
- 5) 한·ASEAN FTA 외에 한·베트남 FTA에 대하여도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신청 시 사본을 우선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원본 제출 허용
- 6)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이 원산지 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수입자가 자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 취하 허용
- 7) 원산지증명서 상대국 수정통보의 주체를 세관장에서 관세청장으로 변경
- 8)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기관 명확히 규정

2016.11.11

## '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' 안내

### 3. 의견 제출

1) 제출처 :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실

2) 제출의견 보내실 곳 :

- 전화 : 042-481-3211

- 이메일 : fta@customs.go.kr

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<u>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4. “원산지확인서”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작성·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.</p> <p>5. “국내제조확인서”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작성·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.</p> <p>6. “원산지조사”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.</p> <p>7. “서면조사”란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사무실에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.</p> <p>8. “현지조사”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, 공장, 사업장 또는 주</p>	<p><u>인 및 법인을 말한다.</u></p> <p>4. &lt;삭제&gt;</p> <p>5. &lt;삭제&gt;</p> <p>4. “원산지조사”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.</p> <p>7. &lt;삭제&gt;</p> <p>8. &lt;삭제&gt;</p>	<p>▶ 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삭제</p> <p>▶ 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삭제</p> <p>▶ 서식 상향입법으로 해당 조문 삭제 및 정의에서 삭제</p> <p>▶ 서식 상향입법으로 해당 조문 삭제 및 정의에서 삭제</p>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p>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9. ‘제3국발행송장 거래’란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협정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무역 거래를 말한다.</p> <p>10. “원산지인증수출자”란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」 제9조의2에 따라 세관장이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증한 자를 말한다.</p> <p>11. “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customs.go.kr">http://customs.go.kr</a>) 또는 관세청 FTA포털(<a href="http://fta.customs.go.kr">http://fta.customs.go.kr</a>)을 말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9. &lt;삭제&gt;</p> <p>10. &lt;삭제&gt;</p> <p>5. “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customs.go.kr">http://www.customs.go.kr</a>) 또는 관세청 FTA포털(<a href="http://yesfta.customs.go.kr">http://yesfta.customs.go.kr</a>)을 말한다.</p> <p>6. “소액물품”이란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(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면제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)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을 말한다.</p> <p>7. “원산지소명서”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·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, 주요 생산공정,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</p>	<p>▶ 고시에서 사용하지 않은 용어로서 삭제</p> <p>▶ 원산지인증수출자 고시에 별도로 정의가 있음</p> <p>▶ 민원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정의 추가</p> <p>▶ 민원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정의 추가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	<u>말한다.</u>	
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.	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.	
	<b>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</b>	
	<b>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</b>	
<p>제42조(적용대상) 영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중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차등협정관세를 적용하며,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영 제8조의17과 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물품</p> <p>2.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물품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4조(적용대상)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(이하 “적용수량”이라 한다)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</p> <p>2.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「관세법」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(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.)한 물품으로 한다.</p>	<p>▶ 인용조문 수정</p> <p>▶ 알기 쉽게 항을 구분하여 규정</p>
제43조(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통관절차) 제42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은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며, 그 적용수량은 해	제5조(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)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p>1.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: 선착순으로</p>	<p>▶ 배정절차에 대한 조문 통합</p> <p>▶ 인용조문 수정</p> <p>▶ 배분→법령상 용어인 배정으로 수정</p> <p>▶ 문구조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<u>당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의 수량으로 한다.</u></p> <p><b>제44조(적용수량 도달일의 잔여수량 배분)</b></p> <p>① <u>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순서대로 제1항의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.</u></p> <p>③ <u>남은 잔여수량을 배분한 날부터는 배분하기 전에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던 관세율로는 수량을 증가하여 정정할 수 없다.</u></p>	<p><u>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</u></p> <p>2. <u>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: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</u></p> <p>3. <u>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제2호에 따라 배정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: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순서대로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</u></p> <p>② <u>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남은 잔여수량을 배정한 날부터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 내 협정 관세율로는 정정할 수 없다.</u></p>	<p>▶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</p>
<p><b>제45조(배분에 따른 세액보정)</b> <u>통관지세관장은 제44조에 따라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가산이자</u>는 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6조(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)</b></p> <p>① <u>통관지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배정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</u></p>	<p>▶ 인용조문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	<p>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정정하여야 한다.</p>	
<p>제46조(잔여수량의 게시) 제44조에 따른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·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7조(잔여수량의 게시) ① 영 제3조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품목별 총수량</li> <li>2. 품목별 사용수량</li> <li>3. 품목별 잔여수량</li> </ol> <p>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.</p>	<p>▶ 알기 쉽게 정보공개 대상을 각 호로 구분 정리</p> <p>▶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 명확화</p>
	<p><b>제2절 특정물품의 원산지확인</b></p>	
<p>제37조(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) ① 세관장은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</li> <li>2.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</li> </ol>	<p>제8조(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)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</li> <li>2.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</li> </ol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규칙 제5조 반영</p> <p>▶ 규칙 제5조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<u>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.</p> <p>1.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</p> <p>2. 계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(예 : 스위스연방)로서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, 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,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</p> <p>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.</p> <p>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</p>	<p><u>았음을 입증하는 서류</u></p> <p>3. <u>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</u></p> <p>4. <u>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</u></p> <p>② &lt;삭제&gt;</p> <p>③ &lt;삭제&gt;</p>	<p>▶ 규칙 제5조 반영</p> <p>▶ 규칙 제5조 반영</p> <p>▶ 제1항을 다시 반복 기술하고 있으므로 삭제</p>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p>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▶ 직접운송관련 서류의 제출시점을 규정</p>
<p>제38조(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) ① <u>체약상대국과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유, 곡물 등 액체화물(이하 "액체화물 등"이라 한다)이 하나의 저장시설에 혼합 보관된 경우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그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따른다. 다만,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.</u>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9조(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) ① <u>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, 곡물 등 액체화물(이하 "액체화물 등"이라 한다)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. 다만,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.</u>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	<p>▶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</p> <p>▶ 협정관세적용 대상 물품은 국내 도착 전까지는 원산지상품을 유지하여야 함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제28조(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)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적용받으려는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절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</p> <p>제10조(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)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규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(규칙 별지제1호 서식)</p> <p>2.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의3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</p> <p>② 제1항의 서류 제출은 「관세법」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(이하 “전자신고등”이라 한다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.</p>	<p>▶ 알기 쉽도록 제출서류를 각 호로 규정</p> <p>▶ 전자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신설</p> <p>▶ 원본의 범위 확장 (서류→서류 및 전자문서)</p>
<p>제29조(신청서류 심사) 세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</p> <p>1.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</p> <p>2.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</p> <p>3.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</p>	<p>제11조(신청서류 확인)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</p> <p>2.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</p> <p>3.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선통관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확인이라는 용어로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</p> <p>4. <u>법 제9조제2항</u>에 따른 직접운송 <u>관련서류 구비 여부</u></p> <p>5.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<u>형식적 요건</u>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</p>	<p>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</p> <p>4. <u>법 제7조제2항</u>에 따른 직접운송 <u>관련서류 구비 여부</u></p> <p>5.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<u>적합성</u>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<p><b>제30조(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) ①</b></p> <p><u>법 제10조제1항</u>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</p> <p>2. <u>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물품</u></p> <p>3.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<u>미충족</u> 우려물품</p> <p>4. 물품의 특성,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</p> <p>5.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</u></p> <p>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<u>통지</u>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2조(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) ①</b></p> <p><u>법 제8조제2항</u>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</p> <p>2. <u>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</u></p> <p>3.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<u>위반</u> 우려물품</p> <p>4. 물품의 특성,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</p> <p>5.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<u>필요하다고</u> 인정하는 물품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<u>전자문서로 통보</u>하여야 한다.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1. 서류제출 변경 요구</p> <p>2.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<u>통지받은 때에는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</u>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<u>서류제출 방식으로</u>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<u>별표5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</u>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여 <u>규칙 제16조 제5항의 각 호에</u>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여 <u>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</u> 즉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수리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확인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</u> 수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</p>	<p>1. 서류제출 변경 요구</p> <p>2.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</p> <p><u>3. 보완기간(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)</u></p> <p><u>4.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</u></p> <p>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<u>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</u>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<u>전자신고등의 방식으로</u>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<u>별표4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</u>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④ &lt;삭제&gt;</p> <p>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<u>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</u> 즉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수리하여야 한다.</p>	<p>▶ 보완기간 추가</p> <p>▶ 보완요구 사유 추가</p> <p>▶ 규칙 제21조제5항 개정</p> <p>- 보정→보완</p> <p>- 보완요구사유: 경미한 오류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<u>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조사부서에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의뢰 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<u>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</u>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<u>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</u>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⑤ <u>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.</u></p> <p>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<u>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</u> 아니 하는 경우에는 <u>법 제35조</u>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▶ 원산지 조사의뢰 사유 명확화</p>
<p><b>제31조(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)</b> ① 세관장은 <u>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·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,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,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</p>	<p><b>제13조(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)</b> ① 세관장은 <u>수입자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1. <u>오·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</u></p> <p>2. <u>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</u>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,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</p>	<p>▶ 호를 도입하여 조문 간소화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
<p><b>제32조(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)</b>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입신고서 19번(‘원산지증명서 여부’)란에 ‘X’ 표시</li> <li>2. 수입신고서 46번(‘원산지’)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</li> <li>3. 수입신고서 50번(‘세율’)란에 FTA 관세율 구분부호 기재</li> </ol>	<p><b>제14조(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)</b> 영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입신고서 19번(‘원산지증명서 여부’)란에 ‘X’ 표시</li> <li>2. 수입신고서 46번(‘원산지’)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</li> <li>3. 수입신고서 50번(‘세율’)란에 FTA 관세율 구분부호 기재</li> </ol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<p><b>제33조(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)</b> ①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</li> <li>2.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‘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’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</li> </ol>	<p><b>제15조(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)</b>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</li> <li>2.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‘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’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</li> </ol>	<p>▶ 용어 정리: 심사→확인 - 법 제8조제4항 취지 반영</p> 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2.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</p>	<p>2.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</p>	
<p><b>제34조(동종·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)</b> ①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<u>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</u> 물품은 <u>별표6에</u> 계기된 물품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</li> <li>2.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</li> <li>3. <u>제3국발행 송장</u> 대상물품</li> </ol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</u>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, 제출요구를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6조(동종·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)</b>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<u>요구하지 아니하는</u> 물품은 <u>별표 5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면제물품</u>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경우에는</u>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</li> <li>2.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</li> <li>3. <u>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</u> 물품</li> </ol> <p>② <u>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</u>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2.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③ <u>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, 제출, 수입신고의 수리 및 원산지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</u>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</p> <p>▶ 서류제출 처리 절차 규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<u>제41조(관세체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)</u> <u>규칙 제16조의2제3호</u>에 따라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<u>제40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.</u> 이 경우 <u>제40조제3항</u> 중 ‘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’은 ‘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장(자유무역협정 원산지조사업무 담당부서)’으로 본다.</p>	<p><u>제17조(관세체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)</u> <u>세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「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</u></p>	<p>▶ 관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심사·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절차와 일치시킴</p>
<p><b>제4절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</b></p>		
<p><u>제35조(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)</u></p> <p>① 수입자가 영 <u>제11조</u>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<u>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</u>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2. 원산지증명서 원본(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)</p> <p>1.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8조제2항에 따라 <u>경정청구</u></p>	<p><u>제18조(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)</u> ① 수입자는 영 <u>제5조제1항</u>에 따라 <u>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전자신고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<u>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</u></p> <p>2. <u>원산지증명서 원본(다만,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하거나 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것은 원본으로 본다)</u></p> <p>3.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8조제2항에 따라 <u>경정청</u>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범위 확장(전자이미지, 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것)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내역을 기재한 수입·납세신고정정신청서</p> <p>3.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(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u>구 내용</u>을 기재한 수입·납세신고정정신청서</p> <p>4.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(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</p> <p>② 제1항제2호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.</p> <p>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.</p>	<p>▶ 규제완화 과제 반영</p> <p>- 원본은 세관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제출로 수정</p>
<p>제36조(신청서류 심사) ①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29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1.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<u>1년이 경과</u>되었는지 여부</p> <p>2.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</p> <p>3. 제35조에 따른 서류 구비여부</p> <p>4.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</p> <p>5.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<u>법령의</u> 규정에 따른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9조(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) ① 세관장은 제18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<u>다음 각 호의 사항</u>을 심사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11조 각 호의 사항</p> <p>2.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<u>1년 이내인</u>지 여부</p> <p>3. &lt;삭제&gt;</p> <p>4. &lt;삭제&gt;</p> <p>3. <u>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</u>한지 여부</p> <p>4.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<u>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</u> (기재요령을 포함한다)과 일치하는지 여부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</p>	<p>▶ 제11조에 규정</p> <p>▶ 본문에 규정</p> <p>▶ 사후적용신청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②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<u>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</u></p> <p>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<u>제13조</u>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자료 추가제출 요구 명확화</p>
<p><b>제27조(협정관세적용신청서)</b>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.</p> <p>② <u>다음 각 호에 따라</u>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<u>정정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통보 2.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(제1호의 항목을 제외한다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0조(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)</b></p> <p>① &lt;삭제&gt;</p> <p>① <u>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보 2.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재사항의 수정</p> <p>② <u>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.</u></p>	<p>▶ 기존 고시 제27조제1항이 상향입법되어 제2항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</p> <p>▶ 정정신청을 승인할 때는 전자통관시스템 입력해야함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1조(협정관세적용신청의 취하)</b> ① <u>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취하하고자 하</u></p>	<p>▶ 협정관세적용신청을 수입자가 스스로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</p>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	<p>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 취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정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또는 원산지증빙서류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</p> <p>2.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은 물품의 세율을 협정세율이 아닌 「관세법」 제50조에 따른 세율로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취하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신청 승인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 취하승인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의 효력은 상실한다.</p>	<p>처리 절차를 신설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2조(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취소)</b></p> <p>① 세관장은 법 제17조 또는 법 제19조에 의한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35조의 협정관세 적용제한 처분을 하거나 적용제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신청</p>	<p>▶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취소조문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	<p><u>서를 취소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.</u></p>	
<b>제3장 원산지증명</b>		
<b>제1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</b>		
<p>제7조(원산지증명서 신청인) <u>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 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3조(원산지증명서 신청인) ①</b> <u>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</u></p> <p>2. <u>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(portal.customs.go.kr)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사이트(cert.korcham.net)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</u></p> <p>② <u>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「관세사법」 제3조에 따라 관세사,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으로 한다.</u>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호를 도입하여 조문 간소화</p> <p>▶ 권한 위임자의 법적근거 보완</p>
<p>제6조(증명서 발급기관) ①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(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)에 <u>통보한</u>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</p>	<p><b>제24조(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) ①</b> <u>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(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)에 <u>통보할</u>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은 별표1과 같다.</p> <p>②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,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(이하 "대한상공회의소"라 한다.)는 <u>대한상공회의소장이</u>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.</p>	<p>1. 「<u>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</u>」 제22조에 따른 세관</p> <p>2. 「<u>상공회의소법</u>」에 따라 설립된 <u>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</u></p> <p>②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,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(이하 "대한상공회의소"라 한다.)는 <u>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</u>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.</p>	<p>▶ 호를 도입하여 조문 간소화</p> <p>▶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명칭 정정 (대한상공회의소장 → 대한상공회의소 회장)</p>
<p><b>제21조(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)</b></p> <p>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<u>증명서 발급기관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사본</u></p> <p>2. <u>업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건에 대한 반려 실적</u></p> <p>3. <u>업체별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실적</u></p> <p>4. <u>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생략대상으로 처리한 실적</u></p> <p>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실적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실적은 조사처분 결과를 등록하</p>	<p><b>제25조(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)</b></p> <p>규칙 <u>제9조제5항 및 제6항</u>에 따라 <u>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</u></p> <p>2. <u>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(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)</u></p> <p>3. <u>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</u></p> <p>4. <u>제3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</u>으로 처리한 실적</p> <p>&lt;삭 제&gt;</p>	<p>▶ 규칙 개정내용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여야 한다.</p> <p><b>제19조(반려 및 조사의뢰 등) 증명서</b> 발급기관은 <u>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</u>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: 신청서류 반려</p> <p>가.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</p> <p>나.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</p> <p>다. 제12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</p> <p>2. 고의나 허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: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</p>	<p><b>제26조(반려 및 조사의뢰 등) ①</b> 증명서발급기관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제31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</u></p> <p>2. &lt;삭 제&gt;</p> <p>2. <u>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</u></p> <p>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<u>제28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고의 또는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.</u></p>	<p>▶ 호를 도입하여 조문 간소화</p> <p>▶ 범칙조사관련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신설</p>
<p><b>제4조(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)</b> <u>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았으면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·서명하여야 한다. 다만,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·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·서명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27조(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)</b></p> <p>① <u>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·발급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▶ 알기 쉽게 항을 분리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·발급받을 수 있다.</p> <p>③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목적으로 작성·발급되어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은 협정에서 정한 경우 계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(전송)되어야 한다.</p>	<p>▶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</p> <p>▶ 원산지증명서 작성·발급 목적 신설</p> <p>▶ 협정에 따라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본송부</p>
<p>제9조(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) ① 신청인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인증 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</p>	<p>제28조(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)</p> <p>① &lt;삭제&gt;</p> <p>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인증 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<u>제품</u>을 추가</p>	<p>▶ 상향입법으로 삭제</p> <p>▶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확대 (서면→전자문서 원칙, 서면예외)</p>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p>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</u>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"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·정보"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</li> <li>2.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</li> <li>3.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(Reference No)를 제출하는 경우</li> </ol> <p>&lt;신 설&gt;</p>	<p>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</u>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"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·정보"의 <u>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</li> <li>2.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</li> <li>3.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(Reference No)를 제출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④ <u>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</u>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전자적인 방식 (전자문서)를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	<p><u>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.("전자문서 방식"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)</u></p> <p>1. <u>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: 「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</u></p> <p>2. <u>대한상공회의소에 발급신청하는 경우: 「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」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</u></p>	<p>활용하기 위한 발급기관 시스템 사전 등록 신설</p>
<p><b>제10조(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) 규칙</b> 제6조제2항의 "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·정보"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</p> <p>1.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(예: 원료구입명세서, 자재명세서(BOM), 생산공정명세서, 사용자매뉴얼, 홍보책자 등)</p> <p>2.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,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(예: 자재명세서(BOM), 원료구입명세서, 원료수불부, 원가산출내역서 등)</p>	<p><b>제29조(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) 규칙</b> 제10조제2항의 "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·정보"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</p> <p>1.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(예: 원료구입명세서, 자재명세서(BOM), 생산공정명세서, 사용자매뉴얼, 홍보책자 등)</p> <p>2.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,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(예: 자재명세서(BOM), 원료구입명세서, 원료수불부, 원가산출내역서 등)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3. <u>규칙 제6조의3</u>에 따른 원산지(포괄)확인서 및 <u>규칙 제6조의4</u>에 따른 <u>국내제조(포괄)확인서</u></p> <p>4.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·생산장소·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</p>	<p>3. <u>규칙 제12조</u>에 따른 원산지(포괄)확인서 및 <u>규칙 제13조</u>에 따른 <u>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(포괄)확인서</u></p> <p>4.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·생산장소·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</p>	<p>▶ 규칙의 용어로 정비</p>
<p><b>제17조(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)</b>  증명서발급기관이 <u>규칙 제6조제3항</u>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<u>별표3</u>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.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3일 이내(선적일을 포함한다)에 발급할 때와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(선적일을 포함한다)에 발급할 때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(Certification) 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12번 항목(Certification)에 날인</p> <p>2. 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(Remarks)에 날인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0조(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)</b> 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<u>규칙 제10조 제3항</u>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<u>별표1</u>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.</p> <p>1. 규칙 <u>별지 제10호서식(싱가포르와의 협정)</u> : 15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</p> <p>2. 규칙 <u>별지 제12호서식(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)</u> : 12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</p> <p>3. 규칙 <u>별지 제14호서식(인도와의 협정)</u> : 제6란(Remarks)에 날인</p> <p>4. 규칙 <u>별지 제22호서식(베트남과의 협정)</u> : 12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</p> <p>5. 규칙 <u>별지 제24호서식(중국과의 협정)</u> : 제5란(Remarks)에 날인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</p>	<p>▶ FTA특례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 변경</p> <p>▶ 호를 도입하여 조문 간소화</p> <p>▶ 협정별 증명서 발급 기간을 반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날인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<u>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: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(선적일을 포함한다)에 발급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인도와의 협정 :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베트남과의 협정 :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</u></p> <p>4. <u>중국과의 협정 : 선적일 후 7 근무일(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</u></p> <p>③ <u>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“소급발급”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.</u></p>	<p>영하고, 근무일을 명확화</p> <p>▶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방법 신설</p>
<p><b>제12조(현지확인) ①</b> <u>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</p> <p>2.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</p> <p>3. 확인대상 내용</p> <p>4.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</p> <p>② 신청인은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<u>경우에는 연기하려는 기</u></p>	<p><b>제31조(현지확인) ①</b> <u>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예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</p> <p>2.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</p> <p>3. 확인대상 내용</p> <p>4.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<u>때에는 현지확인</u></p>	<p>▶ 서식 신설</p> <p>▶ 자연스러운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<u>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현지확인을 실시하는 세관장은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,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규칙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u></p> <p>1.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%를 초과하는 자. 이 경우 ‘오류 등의 비율’은 제19조제1호 해당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.</p> <p>2. 전년도에 법 및 「관세법」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. 다만, 법 제24조, 「관세법」 제270조· 제276조·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3.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, 제조과정(예 : 단순 가공 공정) 및 물품의</p>	<p><u>을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세관장은</u>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<u>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지확인을</u>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제32조로 이동&gt;</p>	<p>문장으로 수정</p> <p>▶ 서식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특성(예 :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) 등을 고려하여 <u>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</u></p> <p>⑤ 관세청장은 <u>제4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1월 15일 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즉시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<u>제5항에 따라 지정된 현지확인 대상자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. 다만,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&lt;제32조로 이동&gt;</p> <p>&lt;제32조로 이동&gt;</p>	
<p><b>제12조(현지확인) ④</b> <u>규칙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u></p> <p>1.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%를 초과하는 자. 이 경우 ‘오류 등의 비율’은 제</p>	<p><b>제32조(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)</b></p> <p><u>①</u> <u>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‘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’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%를 초과하는 자. 이 경우 ‘오류 등의 비율’은 <u>제26조</u>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19조제1호 해당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.</p> <p>2. 전년도에 법 및 「관세법」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. 다만, 법 제24조, 「관세법」 제270조·제276조·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3.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, 제조공정(예 : 단순 가공 공정) 및 물품의 특성(예 :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)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</p> <p>⑤ 관세청장은 제4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즉시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현지확인 대상자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</p>	<p><u>제1항에 해당 하는</u>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.</p> <p>2. 전년도에 <u>다음 각 목의 법령</u>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.</p> <p><u>가. 법 제44조 내지 제45조</u> <u>나. 「관세법」 제268조의2, 제269조, 제270조, 제270조의2, 제276조</u></p> <p>3.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, 제조공정(예 : 단순 가공 공정) 및 물품의 특성(예 :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) 등을 고려하여 <u>규칙 제4조</u>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</p> <p>② 관세청장은 <u>제1항의</u>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<u>2월 1일</u>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제1항</u>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<u>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</u>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세관장은 제31조에 따른 현지확인</u>을 한 결과 <u>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</u></p>	<p>▶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령조문 삭제</p> 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지정기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</p> <p>▶ 문맥 정리</p> <p>▶ 조항 간소화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. 다만,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<u>제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
<p><b>제13조(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 확인 요청 절차)</b> ① <u>규칙 제6조의2 제1항</u>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<u>대한상공회의소장은</u>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<u>현지확인 요청서</u>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(공휴일·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)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명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(보고)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3조(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 확인 요청 절차)</b> ① <u>규칙 제10조제5항</u>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<u>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</u>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<u>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</u>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(공휴일·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)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명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(보고)하여야 한다.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<p><b>제11조(신청서류 심사)</b> ① <u>규칙 제6조제5항</u>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</p> <p>1.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</p>	<p><b>제34조(신청서류 심사)</b> ① <u>규칙 제10조제6항</u>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</p> <p>1.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2.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</p> <p>3. 계약상대국의 협정관세 <u>적용</u>품목인지 여부</p> <p>4. <u>계약상대국</u>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</p> <p>5.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<u>기재요령</u>과 일치하는지 여부</p> <p>6. <u>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</u> 여부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원산지인증수출자(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)</p> <p>2.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(AEO) AA 등급 이상</p> <p>3. 최근 1년이내 <u>원산지조사</u> 결과 ‘이상없음’으로 확인된 업체</p> <p>&lt;<u>신설</u>&gt;</p>	<p>2.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</p> <p>3. 계약상대국의 협정관세 <u>양허</u>품목인지 여부</p> <p>4. <u>규칙 제4조의</u>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</p> <p>5.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<u>규칙 별지제3호서식의 기재요령</u>과 일치하는지 여부</p> <p>6. <u>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</u> 여부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원산지인증수출자(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)</p> <p>2.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(AEO) AA 등급 이상</p> <p>3. 최근 1년이내 <u>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</u> 결과 ‘이상없음’으로 확인된 업체</p> <p>③ <u>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.</u></p>	<p>▶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 통지 신설-업무 효율화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<b>제14조(원산지증명서 발급)</b>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본 1부와 부분 2부(인도와의 협정은 3부)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분 1부(인도와의 협정은 2부)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분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5조(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)</b></p> <p>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.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.</p> <p>1. 인도와의 협정: 원본 1부와 부분 2부</p> <p>2. 그 밖의 협정: 원본 1부와 부분 1부</p> <p>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분 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</p>	<p>▶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</p> <p>▶ 호를 도입하여 조문 간소화</p> <p>▶ 제2항 하단을 별도의 항으로 규정</p>
<p><b>제15조(원산지증명서 재발급)</b> ①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재발급신청사유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(인도와의 협정만 해당)을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</p>	<p><b>제36조(원산지증명서 재발급)</b>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</p> <p>2. 재발급 신청 사유서</p> <p>3.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(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호를 도입하여 조문 간소화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당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2의 재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.</p> <p>1.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(Certification)에 날인</p> <p>2. 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경우에는 12번 항목(Certification)에 날인</p> <p>3. 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(Remarks)에 날인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은 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.</u></p> <p>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<u>서면으로 재발급</u> 하는 경우에는 <u>별표2</u>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.</p> <p>1. 규칙 <u>별지 제10호서식(싱가포르와의 협정) : 15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</u></p> <p>2. 규칙 <u>별지 제12호서식(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) : 12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</u></p> <p>3. 규칙 <u>별지 제14호서식(인도와의 협정) : 제6란(Remarks)에 날인</u></p> <p>4. 규칙 <u>별지 제22호서식(베트남과의 협정) : 12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</u></p> <p>5. 규칙 <u>별지 제24호서식(중국과의 협정) : 제5란(Remarks)에 날인하고 “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(발행번호) dated (날짜)”를 추가로 기재</u></p> <p>④ 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“진정등본(CERTIFIED TRUE COPY)”</p>	<p>▶ 협정에서 정한 발급일자 기재 원칙 반영</p> <p>▶ 서면 재발급 절차 명확화</p> <p>▶ 한-베트남 FTA 추가</p> <p>▶ 한-중 FTA 추가</p> <p>▶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절차 명확화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	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.	
<p><b>제16조(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) ①</b>  <u>제14조</u>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,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, 수량, 품목번호 등의 착오, 누락,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</li> <li>2. 원산지증명서 원본(다만,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,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)</li> </ol> <p>&lt;신 설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</li> <li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정정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.</li> </ol>	<p><b>제37조(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) ①</b>  <u>제35조</u>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,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, 수량, 품목번호 등의 착오, 누락,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<u>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</u>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</li> <li>2. 원산지증명서 원본(다만,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,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)</li> <li>3.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</li> <li>4.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</li> </ol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</u>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<u>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</u> 할 수 있다.</p> <p>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</p>	<p>▶ 규제개선 과제 반영  -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 ① 사후적용신청  ② 원산지증명서 정정 신청</p> <p>▶ 한-베트남FTA 추가</p> <p>▶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재정리</p>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p>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.</p> <p>1. <u>아세안회원국 및 인도와의 협정</u> :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,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</p> <p>2.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일자는 기존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3. 그 밖의 협정 :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,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.</p> <p>1. <u>아세안회원국, 인도와의 협정 및 베트남과의 협정</u> :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,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</p> <p>&lt;제4항을 신설하여 이동&gt;</p> <p>2. 그 밖의 협정 :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,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</p> <p><u>④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.</u></p> <p>1. <u>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</u></p> <p>2. <u>베트남과의 협정</u></p>	<p>▶ 협정내용 반영</p> <p>- 한-아세안 및 한-베트남</p>
<p>제18조(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) ① 제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장</p>	<p>제38조(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) ① 제2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발급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에게 발급 전까지 <u>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</u>로 발급 취하를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장은 신청인이 단순실수로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 취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전까지 <u>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</u>를 제출하여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발급취하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</u></p>	
<p><b>제20조(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)</b> ① <u>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전자문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.</u></p> <p>② <u>원산지 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으려는 자(수출신고한 관세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: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</u></p> <p>2. <u>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: 별지 제5</u></p>	<p><b>제39조(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)</b> ① <u>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<u>호서식 :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에 접속하여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</u></p> <p>③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<u>첨부하여</u>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.</p>	<p>③ <u>제28조제1항</u>에 따른 <u>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</u>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<u>제10조제1항</u>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<u>서면으로 첨부하여</u>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<u>발급기관의 장</u>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.</p>	
<p>제22조(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 이수)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<u>대한상공회의소</u> 증명서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.</p> <p>1. 필수교육 : FTA 원산지 규정 2. 선택교육 :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품목분류, 물품가격의 산정,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교육 등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40조(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 이수) ① 규칙 <u>제11조제3항</u>에 따라 <u>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</u> 증명서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FTA 법령에 관한 사항 2.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.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 4.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5.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</p> <p>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 ▶ 항으로 분리하여 조문정리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	<p>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.</p>	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41조(원산지(포괄)확인서 작성대장)</b></p> <p>① <u>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작성번호 및 작성일</li> <li>2. 품명·품목번호·수량 및 단위</li> <li>3. 원산지·원산지결정기준·</li> <li>4. 공급받은 자</li> <li>5. 원산지 포괄확인기간</li> </ol> <p>② <u>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을 기재·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	<p>▶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신설</p>
<p><b>제39조의2(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)</b> ① <u>규칙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(이하 "원산지확인서등"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42조(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)</b> ① <u>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(포괄)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p>1. <u>원산지확인서등</u></p> <p>2. <u>원산지확인서등</u>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</p> <p>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.</p> <p>1.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</p> <p>2. <u>원산지확인서등</u>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</p> <p>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<u>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세관장은 <u>원산지확인서등</u>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·거소·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</p> <p>⑤ <u>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제1항에 따른 <u>원산지확인서 등</u>에</p>	<p>1. <u>원산지(포괄)확인서</u></p> <p>2. <u>원산지(포괄)확인서</u>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</p> <p>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.</p> <p>1.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</p> <p>2. <u>원산지(포괄)확인서</u>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</p> <p>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<u>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세관장은 <u>원산지(포괄)확인서</u>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·거소·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</p> <p>⑤ &lt;삭 제&gt;</p> <p>⑤ 제1항에 따른 <u>원산지(포괄)확인</u></p>	<p>▶ 제2항에서 처리기간을 명시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<u>서</u>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
<b>제2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</b>		
<p><b>제23조(원산지증명서 작성·서명자 등)</b> ①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·관리하기 위하여 <u>별지 제7호서식</u>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·부서명·직책·성명·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3조(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등록 및 해제)</b> ① <u>규칙 제14조</u>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·관리하기 위하여 <u>별지 제10호서식</u>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·부서명·직책·성명·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.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<p><b>제25조(원산지증명서 작성·서명)</b>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·서명한 후 <u>규칙 제8조제2항</u>의 규정에 따라 <u>작성·서명 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생산자(재료생산자)가 다음 각 호</p>	<p><b>제44조(원산지 자율증명 절차)</b>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·서명한 후 <u>규칙 제14조제2항</u>의 규정에 따라 <u>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생산자(재료생산자)가 다음 각 호</p>	<p>▶ 서식이 규칙에 상향입법 되어 문맥 조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의 서류를 작성·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1. 규칙 <u>제6조의3</u>제1항의 원산지(포괄)확인서</p> <p>2. 규칙 <u>제6조의4</u>의 국내제조(포괄)확인서</p> <p>3. 규칙 <u>제6조</u>제1항제4호의 원산지 소명서</p>	<p>의 서류를 작성·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1. 규칙 <u>제12조</u>제1항의 원산지(포괄)확인서</p> <p>2. 규칙 <u>제13조</u>의 국내제조(포괄)확인서</p> <p>3. 규칙 <u>제10조</u>제1항제4호의 원산지 소명서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<p><u>제24조(원산지확인서 등 작성)</u>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·제출한 <u>별지 제11호</u>서식의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. 단, 휴·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<u>별지 제12호</u>서식의 생산자 서면진술서나 생산자·생산장소·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</p>	<p><u>제45조(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)</u>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·제출한 <u>별지 제11호</u>서식의 <u>한-칠레 FTA 원산지신고서</u>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. 다만, 휴·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<u>원산지신고서</u>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<u>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수출용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·생산장소·생산공정</u>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<u>자료 또는</u>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▶ 한-칠레 협정 반영</p> <p>▶ 법적근거가 없는 생산자 서면진술서를 삭제하고, 규칙 제12조, 제13조에 따른 입증서류를 인정하여 민원인 편의도모</p>
	<p><b>제3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</b></p>	
<p><u>제5조(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)</u></p> <p>① <u>법 제11조</u>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 수정통보서는 <u>별지 제1호</u>서식과 같다.</p> <p>② 원산지 수정통보서를 제출받은</p>	<p><u>제46조(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)</u></p> <p>① &lt;삭제&gt;</p> <p>① <u>세관장은 법 제14조</u>제1항에 따라</p>	<p>▶ 영 9조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</p> <p>▶ 기존 제2항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 수정통보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업무 담당 세관장에게 보고(통보)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.</p>	<p><u>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(또는 담당부서)에게 보고(통보)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<u>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</u>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.</p>	<p>두 개의 항목으로 분리</p> <p>▶ 상대국 관세당국 통보 주체 변경 - 세관장 → 관세청장</p> <p>▶ 수정통보서의 접수 및 보고부서 명확화</p>
<b>제4절 원산지관리사</b>		
<p><b>제26조(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)</b> ① 「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」 별표 3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법인등기부 등본</p> <p>2. <u>별표4</u>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</p>	<p><b>제47조(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)</b> ① <u>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 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</u>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<u>별지 제18호서식</u>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법인등기부 등본</p> <p>2. <u>별표3</u>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</p>	<p>▶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법적 근거 추가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<p>있음을 증명하는 서류</p> <p>3. 자격시험 시행계획서</p> <p>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있음을 증명하는 서류</p> <p>3. 자격시험 시행계획서</p> <p>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	
<b>제4장 원산지조사</b>		
<p><u>제39조(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)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.</u></p> <p>1. <u>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·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: 「관세법」 제50조에 따른 세율(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)을 적용</u></p> <p>2. <u>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·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: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신청</u></p>	<p><u>제48조(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)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.</u></p> <p>1. <u>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·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: 「관세법」 제50조에 따른 세율(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)을 적용</u></p> <p>2. <u>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·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: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신청</u>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<b>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</b>		
<p><u>제50조(사전심사의 신청)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.</u></p> <p><u>② 신청인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사</u></p>	<p><u>제49조(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) ① 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② &lt;삭 제&gt;</u></p>	<p>▶ 규칙 별지제35호로 상향입법되어 삭제</p>

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&lt;신설&gt;</p> <p>⑤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.</p>	<p><u>관세평가분류원장</u></p> <p>2.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: 관세청 세원심사과</p> <p>3.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: 관세청 통관기획과</p> <p>4. 영 제37조제1항제5호 : 관세청 특수통관과</p> <p>5.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 : 관세청 세원심사과</p> <p>6. 기타 사항 :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</p> <p>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서면, 우편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.</p>	
<p>&lt;신설&gt; 제50조 ③④항을 이동</p> <p>③ 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영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</p>	<p><u>제50조(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)</u></p> <p>① <u>사전심사기관장은</u>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영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2.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</p> <p>3. 신청주체,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</p> <p>4. <u>제51조</u>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</p> <p>5.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<u>구비서류</u>를 갖추었는지 여부</p> <p>④ <u>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,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2.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</p> <p>3. 신청주체,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</p> <p>4. <u>제52조</u>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</p> <p>5.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<u>서류</u>를 갖추었는지 여부</p> <p>② 사전심사기관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<u>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
<p><b>제51조(신청서류의 보정, 반려 등)</b></p> <p>① 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<u>5일 이상</u>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 협정에서 별도의 보정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정할 사항</li> <li>2. 보정요구 이유</li> <li>3. 보정기간</li> <li>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</p>	<p><b>제51조(신청서류의 보정)</b> ① 사전심사기관장은 <u>영 제37조제3항에 따라</u>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<u>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</u> 정하여 다음 각 호의 <u>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정요구서로 보정</u>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정할 사항</li> <li>2. 보정요구 이유</li> <li>3. 보정기간</li> <li>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</p>	<p>▶ 시행령 반영 -영 제37조3항에 따라 20일 이내 보정요구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<p>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</li> <li>2.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</li> <li>4.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</li> <li>5. <u>주어진 기간내에</u>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6.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<u>대해 원산지조사가</u> 진행되고 있는 경우</li> <li>7.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<u>이의신청</u>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</li> </ol>	<p>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&lt;삭제&gt; * 52조로 이동</p>	
<p>&lt;신 설&gt; ※ 제51조 제3항 이동</p>	<p>제52조(신청서류의 반려) <u>사전심사기관장은 영 제37조제4항</u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</li> <li>2.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</li> </ol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	<p>이 아닌 경우</p> <p>3.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</p> <p>4. <u>제51조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</u>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5.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<u>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</u></p> <p>6.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<u>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</u></p>	
<p><u>제52조(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) 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>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</u>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2.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</p>	<p><u>제53조(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) 사전심사기관장은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<u>관세법 시행령</u>」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2.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</p>	<p>▶ 법 인용 작성 방식에 따름</p>
<p><u>제53조(사전심사 결과통지)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</u>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.</p>	<p><u>제54조(사전심사 결과통지)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</u> 별지 <u>제14호서식</u>과 같다.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② 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<u>제28조의</u>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관장은 <u>영 제19조 제6항</u>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<u>제10조에 따라</u>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관장은 <u>영 제37조제6항</u>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.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<p><u>제55조(사전심사서의 효력)</u>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‘물품의 내용’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<u>제55조(사전심사서의 효력)</u>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‘물품의 내용’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.</p>	
<p><u>제54조(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)</u> 법 제14조제5항과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으며,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<u>제56조(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)</u> <u>영 제38조에 따른 이의제기서와 첨부서류는 서면, 우편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	<p>▶ 서식이 규칙에 상향입법 되어 별지서식 삭제</p> <p>▶ 제출방법 규정</p>
<p><u>제56조(사전심사 내용의 변경)</u> ① 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내</p>	<p><u>제57조(사전심사 내용의 변경)</u>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내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<p>용 수정통보서는 <u>별지 제25호서식</u>과 같다.</p> <p>② <u>관세청장은</u>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<u>당해</u>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전심사서가 <u>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</u>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<u>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영 제20조제3항에 따라</u> 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<u>변경한 경우에는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<u>그 변경내용을 법 제14조제2항의 신청인·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(통보)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전심사서 <u>변경 이유</u> 및 법적 근거</li> <li>2. 사전심사서 <u>변경내용</u> 적용일</li> <li>3.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</li> <li>4. <u>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</u></li> </ol> <p>④ <u>수입자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·세액보정신청 또는 수</u></p>	<p>용 수정통보서는 <u>별지 제15호서식</u>과 같다.</p> <p>② <u>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</u>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<u>해당</u>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전심사서가 <u>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</u>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<u>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사전심사기관(부서)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</u>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<u>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<u>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, 수입자</u>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(통보)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전심사서 <u>변경 또는 철회</u> 이유 및 법적 근거</li> <li>2. 사전심사서 <u>변경 또는 철회</u> 내용 적용일</li> <li>3. &lt;<u>삭 제</u>&gt;</li> <li>3. <u>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</u></li> </ol> <p>④ &lt;<u>삭 제</u>&gt;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 <p>▶ 법 32조③항에 따라 사전심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정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관세법」 제38조·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·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다만, 수입자가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	<p>변경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해 적용 →이전 수입신고 수리된 것에 대한 세액보정 등 절차 불필요하여 삭제</p>
<p><b>제57조(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)</b> ① 규칙 제23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(신청)서는 <u>별지 제26호서식</u>과 같다. <b>&lt;신설&gt;</b> 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<u>보완 및 반려</u>에 대하여는 <u>제51조</u>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58조(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)</b> ① <u>규칙 제33조</u>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(신청)서는 <u>별지 제16호서식</u>과 같다.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<u>보정과 반려</u>에 대하여는 <u>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을</u> 준용한다.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  ▶ 규칙 제33조 제2항 반영</p>
<b>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</b>		
<p><b>제40조(협정관세 적용제한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)</b> ① 수입자는 <u>법 제16조제3항</u>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<u>수출·생산 또는 수입하는 물품</u>에 대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<u>제28조</u>에 따라 협정</p>	<p><b>제59조(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<u>생산·수출하는 물품</u>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)</b> ① 수입자는 <u>법 제37조제3항</u>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<u>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</u>이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<u>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</u>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<u>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족 여부</u></p> <p>2. <u>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 증빙자료 작성요령 준수 여부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<u>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</u></p> <p>③ 통관지세관장은 <u>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8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으며, 원산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장에게 <u>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<u>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</u></p> <p>1. <u>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특혜적용 요건의 충족 여부</u></p> <p>2. <u>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여부</u></p> <p>3. <u>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충족 여부</u></p> <p>4. <u>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</u></p> <p>③ 통관지세관장은 <u>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협정관세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8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통관지 세관장은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</u></p>	<p>▶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</p> <p>▶ 원산지요건 기준 명확화</p> <p>▶ 직접운송 요건 추가</p> <p>▶ 문맥 정리</p> <p>▶ 원산지조사 의뢰 근거 마련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④ 통관지세관장은 <u>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</u>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(통보)하여야 한다.</p>	<p>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<u>법 제17조 제1항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</u>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⑤ 통관지세관장은 <u>제3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</u>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(통보)하여야 한다.</p>	
<p><u>제49조(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)</u>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<u>별지 제20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</u>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산지소명서(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)</li> <li>2.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</li> <li>3.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</li> </ol>	<p><u>제60조(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)</u>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<u>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</u>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<u>한다.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, 우편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산지소명서(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)</li> <li>2.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</li> <li>3.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인용조문 변경</li> <li>▶ 서식이 규칙에 상향입법 되어 문맥 조정</li> </ul>
<b>제7장 보칙</b>		
<p><u>제58조(비밀취급자료 지정)</u>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<u>별지 제27호서식</u>과</p>	<p><u>제61조(비밀취급자료 지정)</u>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<u>별지 제17호서식</u>과 같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인용조문 변경</li> </ul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같다.		
<p><b>제59조(범칙조사의뢰)</b>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<u>법 제22조</u>나 「관세법」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범칙행위자의 확인서</li> <li>2.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</li> <li>3.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</li> </ol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, 관세청장은 이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62조(범칙조사의뢰)</b>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<u>법 제44조 내지 제45조</u>나 「관세법」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범칙행위자의 확인서</li> <li>2.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</li> <li>3.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</li> </ol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, 관세청장은 이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▶ 인용조문 변경</p>
<p><b>제60조(통지방법)</b>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E-MAIL, FAX로 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63조(통지방법)</b>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E-MAIL, FAX로 하여야 한다.</p>	
<p><b>제61조(준용규정)</b>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및 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64조(준용규정)</b>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,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및 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▶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추가</p>
<p><b>제62조(재검토기한)</b>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</p>	<p><b>제65조(재검토기한)</b>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</p>	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<p>여 <u>2016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여 <u>2017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
<p><u>제8조(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)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▶ 서식이 규칙에 상향입법 되어 조문 삭제</p>
<p><u>제27조(협정관세적용신청서)</u>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통보</p> <p>2.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(제1호의 항목을 제외한다)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▶ 서식이 규칙에 상향입법 되어 조문 삭제</p> <p>▶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2항으로 이동</p>
<p><u>제47조(원산지조사 연기신청) 법 제12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서면조사시 서류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현지조사시 그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▶ 서식이 규칙에 상향입법 되어 조문 삭제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조사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.</p>		
<p><u>제48조(이의제기서)</u>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	<p>▶ 서식이 규칙에 상항입법 되어 조문 삭제</p>